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함(안 제3조)

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간사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함(안 제6조제2항)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제1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과장
 2. 도시정비과장
 3. 교통행정과장
 4. 교통지도과장
 5. 건설관리과장
 6. 토목과장
 7.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 제6조제2항중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생략)</p> <p>②(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2. 지역교통과장 3. 도시정비과장 4. 건설관리과장 5. 토목과장 6.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7.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p>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2. 교통행정과장 3. 교통지도과장 4. 도시정비과장 5. 건설관리과장 6. 토목과장 7.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8.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p>제6조(간사와 서기) ①(생략)</p> <p>②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칭하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p>	<p>제6조(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p> <p>②.....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p>

民防衛教育場 新設

관내 민방위대원 전용교육장 미확보로 타구 소재 민방위교육장(동작구 보라매 공원내)이용에 따른 원거리 소재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과도한 소요시간(1시간 이상)

으로 야기되는 고질적 민원해소와 민방위교육 효과제고를 위하여 관내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확보하고자 함.

I. 方針

가. 관내소재 교육가능 장소현황 파악

나. 마포구 소재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

II. 概要(現況)

가. 민방위교육

- 1) 대상: 마포구 민방위대원(1~5년차 민방위대원)...26,000명
- 2) 시기: 상·하반기 각 1회(3월~7월, 9월~12월)...오전, 오후 4시간
- 3) 종류: 기본교육, 1차보충교육, 2차보충교육(반기별)
- 4) 학급편성 기준: 1학급당 400명(시청지침)

나. 교육장(현용)

- 1) 장소: 보라매민방위교육장(보라매 공원내-구 공군사관학교)
- 2) 규모: 강당 2개동(1, 2강당)
- 3) 수용능력: 1일 약 1,400명(1개 강당 최대 700명 수용)
- 4) 교육소요일수: 연 50일 소요

III. 推進計劃

□기본방침

- 난지도관리사업소내 기자재창고 개조하여 교육장 사용
- 96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전 공사완료
- 기존건물 개조 및 주변녹지대 정비(토목, 건축, 설비, 전기공사)
- 교육장 부대시설 신설(화장실, 휴게실 등)
- 교육관련 기자재 구매확보

□현황

가. 기자재창고

- 위치: 난지도관리사업소내(관리동 건물옆 독립건축물)
- 면적: 145평(72.5평 2개동 내력벽사이 인접구조)
- 구조: 1층 슬라브 벽돌구조(창고식 일체형)

□세부계획

가. 교육장 운용계획

- 개장시기: 96. 6월(예정)
- 수용규모: 450석
- 교육소요일수: 반기별 55일(연간 110일)
- 교육대상인원: 26,000명

나. 공사별 시행계획(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부터 60일간)

1) 기자재창고 보수 및 개조

○건축 및 설비공사

- 본관건물 증축: 120m²
- 건물 내부수선: 480m²
- 정문문주, 적벽돌 담장: 192m
- 스틸철문, 엘터: 54×2.4m

○전기공사

- 형광등, 백열등, 보안등(85개 등)
- 전열 및 기타공사
- 방송 및 전화설비
- 배관 및 배선

다. 교육장 부대시설 신축

○화장실 신축(57.6m²)

- 화장실 변기: 좌변기 3, 양변기 7
- 소변기: 스텐레스 일자형

○휴게실 신축(50.4m²)

- 주방시설 설비
- 파고라 설치
- 직원대기실, 숙직실

라. 교육기자재 구비

- 교구자재, 사무용 집기, 휴게실 의자

-냉난방 시설

-암막시설, 앰프시설, 운전동사기

마. 주변녹지대 정리계획

- 지정수목이식
- 수량: 100주

○토목공사

- 경계블록 설치: 156m
- 콘크리트포장: 1,786m²

□소요예산

가. 총계: ₩464,476천원

○건축, 토목, 전기, 설비공사: ₩362,870천원

○앰프등 14종 기자재구입비: ₩99,106천원

○현판 입간판: ₩2,500천원

(다음 페이지에 계속)

예비비사용 요구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4100	4100	4111	140	405	₩464,476	(01) 자산취득비 앰프의 14종 기 자재구입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99,106	
4100	4100	4111	250	401	₩362,870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4100	4100	4111	140	201	₩2,500	(01) 일반수용비 현판 입간판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IV. 期待效果

- 가. 관내소재 교육장 확보로 민방위대원의 고질적 민원해소
- 나. 근거리에 따라 교육 및 업무추진 용이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 이전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70
----------	----

제안년월일 : 1996. 3. 30.
제안자 : 시민보전위원장

마포구 상암동 1563번지에 소재한 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은 서울특별시와 대형생활폐기물과쇄시설 설치운영 및 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94년 4월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등 모든 대형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이를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하는 시설임. 그러나 사업개시 이후 반입된 대형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말처리품에 대한 처리방법, 장소 및 절차 등의 대책이 전무한데다 주먹구구식의 산만한 야적과 폐기물 방치 등으로 각종 유해물질이 인근 주택가에 흘러들어가고, 폐기물 운반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공해로 인하여 동 시설은 마포구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었음.

1994년 10월 29일 동 시설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이후 관계기관에서는 메탄가스에 의한 발화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화

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을뿐만 아니라 대형생활폐기물을 과다하게 반입하여 재활용후 발생된 폐기물인 우레탄, 쇼파, 침대매트리스 등을 처리하지 않고 1만 1천 여톤의 쓰레기를 야적하였는 바, 1996년 2월 13일 중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또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음.

금번 3일간 계속된 화재로 인하여 상암동, 성산동 및 망원동 일대는 매연과 악취, 유독성가스로 뒤덮였고, 인근주민들은 두통, 눈통증, 기관지 등의 이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건강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난지도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으며, 더욱이 최근 이러한 유해성 폐기물의 반입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즉각 난지도에서 철수하고 대형폐기물처리공장을 즉각 이전하라.
2. 난지도매립지 피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즉각 보상하고, 현재 건설중인 파쇄처리시설도 즉각 중단하라.
3. 야적된 대형생활쓰레기를 즉각 처리하고 계속 반입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일체 중단하라.